

국 민 안 전 처

훈계·주의 요구

제 목 ○○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철원군

관 련 자 철원군 ○○○○○○(전 ○○○○과) 지방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 ○○○은 2012. 10. 15.부터 2014. 11. 16까지 철원군 ○○○○과에서 근무하면서 ○○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.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 및 시장·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,

이에 근거하여 철원군에서는 강우 시 우수의 직접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에 침투시키거나 저류시키는 시설(이하 “우수저류시설”이라 한다)을 [표1]과 같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선정, 제안요청 및 신기술 시공사 선정, 제안평가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부적정 하게 업무를 추진하였다.

[표 1] 철원군 우수저류시설 사업 현황

공사 구분	사업량	사업비(백만원)			사업기간	도급업자	비고
		계	국비	지방비			
계		7,948	3,974	3,974			
일반	저류조 10,000m ³ 배수암거 L=683m	7,000	3,500	3,500	2014.4.8.~ 2015.7.6.	○○○○(주) 외 1	
기타	전기공사 1식, 폐기물 처리 1식 등	948	474	474		○○○○ 외 1	폐기물·전기공사 등

* 자료 : 철원군 제출자료 재구성

1. 기본설계 과정에서 우수저류조 공법선정 과정 부실

철원군은 ○○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3. 3. 28.(주)○○ 및 (주)○○엔지니어링과 369,809천원에 공동도급계약을 맺고 기본·실시설계를 추진하였다.

기본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수저류시설 공법 선정을 위해 [표2]와 같이 6가지 종류의 공법을 비교하면서 근거자료 제시 등 산술적인 비교검토 없이 공사기간, 시공성, 안전성 등 항목을 Half PC공법 선정에 유리하도록 평점을 높게 배정하여 공정한 비교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.

[표 2] 우수저류시설 공법 항목별 평가(기본설계 4-75)

공법	평 가 기 준											채택	비고
	공기	시공성	경제성	품질	수밀성	현장성	유지	안전성	규모	일체성	계		
	10	15	15	10	10	5	10	5	10	10	100		
현장타설	4	4	8	6	8	8	8	6	8	9	67		3
현장타설(무지보)	4	7	6	6	8	8	8	8	8	8	71		2
All PC	7	8	6	8	6	4	6	8	6	6	65		4
Half PC	9	9	8	8	7	8	7	8	7	8	79	●	1
천수함	6	8	4	6	4	6	6	6	4	6	56		5
파형강관 복합형	6	9	4	8	6	4	4	6	4	4	53		6

2. 제안요청 및 시공사 선정 등 부적정

가. 제안요청 과정

철원군은 Half PC 특허공법 시공사 선정을 위해 내부결재를 받아(○○○ ○과-000, 2013. 0. 00.) ‘○○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및 PC 저류조 선정 계획’을 수립하고 제안요청(2013. 8. 23.)을 하였다.

제안요청을 할 경우 충분한 기일을 주고 인터넷 공고 등을 통해 유사한 공법을 가진 업체의 동등한 공사참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, 제안기간을 7일(8. 24.~8. 30.)만 정함으로써 다수업체가 제안에 참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불

가능하게 하였고, 인터넷 공고 등 과정 없이 내부적으로 선정한 8개 업체에 대해서만 우편으로 제안요청을 하는 등 공정한 제안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.

나. 제안평가 과정

철원군은 Half PC 특허공법 시공사 선정을 위해 제안요청을 한 결과 3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¹⁰³⁾ 하였고, 3개 업체에 대해 “○○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공법 심의 위원회”를 개최(2013. 9. 27.)하여 Half PC 대한 ○·○·○(주)를 특허공법 시공사로 선정하였다.

공법 심의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Half PC공법이 사업비가 저렴하고,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공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나

[표 3]과 같이 사업비는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산정하였고, 공사기간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종 30일을 연장하는 등 잘못된 자료를 제공한 결과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.

[표 3] 우수저류시설 사업비 및 공사기간 비교

비고		PC	RC	사유 설명	비고
공사비 m³당 단가		23.756	20.522	최근에 시공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법별로 조사한 결과 RC공법이 PC공법에 비해 m³당 단가 더 싸게 산출 됨	
공사기간	당초	59일	190일		
	재검토	89일	190일	공기연장 및 최종 기성금 지급시 공사 공정 보고(2015.5.26.)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우수저류시설 공정이 9.35%로 당초 산정한 공사기간보다 더 소요된 것으로 확인됨	

3. 실시설계 사전설계 심의 결과 의견 미 채택

철원군은 실시설계 완료 후 구(舊) 소방방재청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전설계 심의를 의뢰 하였고

103) 당초 1개 업체(본 특허공법 시공사)만 제안서를 제출하자 제안서 제출기한을 연장(2013.9.2.~9.6.)하여 2개 업체가 추가로 제출 됨

구(舊) 소방방재청에서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검토위원(7명)을 구성하여 사전 설계심의를 한 결과(2013. 10. 24.)

PC공법의 경우 관급자재(신기술) 낙찰률이 고려되지 않은 사업비로써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공사기간에 문제가 없는 RC공법을 권유하였으나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였다.

4. 우수저류시설 특허공법 협약 미 이행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4장에 따르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 발주(사업)부서가 기본설계·실시 전에 기술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철원군은 ○○지구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면서 특허권을 보유한 업체와 특허협약을 맺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향후 사업 추진 시 공법선정 비교 검토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